

[별표 2]

누수 하자 범위(제10조제2항 관련)

구 분		하 자 내 용	하자종류
부 위	누수상태		
방수공사	상시	- 지붕, 최하층 바닥 및 지하층 외벽 등의 누수 - 욕실, 세탁실, 샤워실 및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 등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진행성 누수	방수하자
	일시	-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의 마감면에 물이 남아 있거나 흔적이 있는 누수(진행성 누수는 상시)	
비방수공사	상시	- 배관(급수·온수·난방 등의 배관 또는 우수관·오수관 등)에서 발생한 누수	배관하자
	상시 (일시)	- 외벽 또는 바닥의 관통균열 또는 이와 유사한 균열부위로 새어 나오는 누수	균열하자
창호공사	상시	- 창호의 외부에 면한 부위에서 빗물 등이 내부로 스며드는 누수 - 문틀 주위의 실링(=코킹) 등의 처리가 불량하여 발생한 누수	창호하자
	일시	- 창호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 있거나 흔적이 있는 경우	
비 고	사용상 또는 유지관리 부실로 발생한 누수는 하자에서 제외한다.		